

의안번호	2126168
의 퇴 인	안민석 의원
회 답 일	2024.01.12.
추계번호	23C0011

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,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5억 1,700만원, 2029년 115억 1,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55억 5,400만원(연평균 111억 1,1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(안 제5조제1항)	99	—	—	—	—	99	20
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(안 제7조)	11,417	10,517	10,838	11,171	11,512	55,455	11,091
— 국비	7,274	6,240	6,424	6,615	6,810	33,364	6,673
— 지방비	4,143	4,277	4,414	4,556	4,702	22,092	4,418
합 계	11,517	10,517	10,838	11,171	11,512	55,554	11,111

- 주: 1.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 2. 안 제7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국비는 유사사례의 2023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100%(중앙센터 인건비, 운영비, 자산취득비) 및 50%(지역센터 인건비)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5조 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여야 한다. (제2항)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.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,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.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 4.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제3항)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. (제4항)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(제5항)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3	안 제6조 (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)	(제1항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자료조사·연구 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3.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4.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사업의 성관 관리 5.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(제3항)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4	안 제7조 (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)	(제1항)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(제2항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8조 (행정적·재정적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대책·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×	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·추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곤란 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2	안 제5조 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
3	안 제6조 (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) 안 제7조 (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)	○	
4	안 제8조 (행정적·재정적 지원)	×	· 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, 현재 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제외하고, 본 추계에서는 ①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¹⁾(안 제5조), ②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(안 제6조)²⁾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
1) 안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교육부 내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

2) 안 제7조에 따라 안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재정

-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” 사례를 준용함³⁾
-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‘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본 추계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설치하는 ‘중앙지원센터’와 교육감이 설치하는 ‘지역지원센터’로 나누어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하며,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‘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’의 경우 5년 주기로 수립되므로 연구용역비가 2025년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,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” 용역을 준용
 -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“장애인정책종합계획”을 수립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하여 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” 용역을 실시하였음
 -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” 용역 사례를 준용하되, 2022년 예산 9,900만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제정안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9,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안 제6조의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안 제6조에 의해서만 발생

3) 안 제5조제2항2호의 ‘실태조사’를 별도의 용역으로 실시하고, 보건복지부 “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”와 유사하게 실시할 경우 ‘1억원’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제정안에서는 이를 별도 규정이 아닌 기본계획의 일부로 규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검토하지 않음

[표 2]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경계선 지능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99	-	-	-	-	99	19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‘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’ 설치·운영 비용은 ‘중앙지원센터’(교육부장관 설치·운영)와 ‘지역지능센터’(교육감 설치·운영)로 나누어 추계하며,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 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”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- 보건복지부는 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” 사업(2023년 예산 75억 9,200만원)⁴⁾을 통하여 1개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17개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음
 -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동일한 규모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유사사례의 배치인력, 인건비, 운영비를 준용하여 추계
 - (배치인력)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총 1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,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총 16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는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에 각각 총 13명과 163명의 인력을 배치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(인건비) 유사사례의 1명당 연간 인건비(2023년 기준 중앙 3,673만원, 지역 4,772만원⁵⁾)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 - (운영비)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간 4억 1,000만원을,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간 9억 3,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 - (자산취득비) 센터 설치에 따른 신규 배치 인력 중앙 13명과 지역 163명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추계연도 첫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4) 부처의 2024년 확정 예산 세부자료가 발간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예산을 준용함

5) 참고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방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보수 차이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「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 관리규칙」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고, 기본연봉 외에 정액인 상여금(연 80만원)과 급량비(월 13만원)를 추가로 받는데 비해, 지방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고 명절휴가비(월급액의 120%)와 설치주체인 시·도별로 지역센터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수당(월 30만원 이내), 정액급식비(월 13만원 이내), 복리후생수당(월 15만원 이내)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.

[표 3]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신규 설치·운영: 2025~2029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인건비								
중앙	인원 수(A)	13	13	13	13	13	65	13
	1명당 연간 인건비(B)	39	40	42	43	44	208	42
	소 계(C=A×B)	509	525	542	559	577	2,712	542
지역	인원 수(D)	163	163	163	163	163	815	163
	1명당 연간 인건비(E)	51	52	54	56	58	271	54
	소 계(F=D×E)	8,287	8,553	8,827	9,112	9,404	44,183	8,837
	－ 국비	4,144	4,277	4,414	4,556	4,702	22,092	4,418
	－ 지방비	4,144	4,277	4,414	4,556	4,702	22,092	4,418
운영비								
중앙(G)		429	439	448	457	467	2,239	448
지역(H)		979	1,000	1,021	1,042	1,064	5,106	1,021
자산취득비								
중앙(I)		90	－	－	－	－	90	18
지역(J)		1,124	－	－	－	－	1,124	225
합 계(C+F+G+H+I+J)		11,417	10,517	10,838	11,171	11,512	55,455	11,091
－ 국비		7,274	6,240	6,424	6,615	6,810	33,364	6,673
－ 지방비		4,143	4,277	4,414	4,556	4,702	22,092	4,418

주: 국비는 유사사례의 2023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100%(중앙센터 인건비, 운영비, 자산취득비) 및 50%(지역센터 인건비)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